광명시 이미지 형성 관리 규정

제정 1996. 12. 30 훈령 제169호
개정 2004. 9. 7 훈령 제242호
2008. 6. 16 훈령 제273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)
2010. 12. 15 훈령 제297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일부개정 2014. 9. 4 훈령 제339호
일부개정 2019. 12. 20 훈령 제411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통합 이미지를 형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애향·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시 이미지형성처리절차 및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소속하에 두는 광명시이미지형성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시 이미지형성계획관리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1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〈개정 2004. 9. 7〉

1. “광명시이미지형성계획(Gwang Myeong City Identity Program, 이하 “시이미지형성계획”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시의 독특한 개성, 즉, 행동양식과 시각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부각시켜 개성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징물의 관리운영 등 시 이미지형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2. 삭제 〈2014. 9. 4〉
3. “총괄부서”라 함은 시 이미지형성계획에 대한 업무처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를 말한다.
4. “시행부서”라 함은 실제로 시 이미지형성계획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.

제4조(총괄부서의 업무)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〈개정

2004. 9. 7, 2019. 12. 20〉

1. 시 이미지형성계획의 종합기획 및 교육
2. 시 이미지형성계획의 적용 전반에 관한 연구・개발 및 홍보
3. 시 이미지형성계획의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시행부서간 조정・통제 등
4. 시 이미지형성업무에 대한 지도・감독
5. 기타 이미지형성업무에 관한 사항

제5조(시행부서의 업무) 각 실・과・소장・직속기관의 장・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〈개정 2004. 9. 7, 2010. 12. 15, 2014. 9. 4〉

1. 별표 1에서 정한 광명시이미지형성계획 관리대상 및 적용범위를 근거로 각 실・과・소・직속기관・동 및 의회사무국의 시 이미지형성계획 수립 및 시행
2. 삭제 〈2014. 9. 4〉
3. 시 이미지형성계획 적용사업의 우선순위 지정・시행

제6조 삭제 〈2014. 9. 4〉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시 이미지형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이미지형성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협조) 시행부서에서 시 이미지형성계획 적용대상분야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정책기획과장의 사전협조를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04. 9. 7, 2019. 12. 20〉

제9조 삭제 〈2004. 9. 7〉

제10조 삭제 〈2004. 9. 7〉

제11조(업무의 승계) 시 이미지형성의적용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된 때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12조(위임규정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4. 9. 7 훈령 제242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8. 6. 16 훈령 제273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0. 12. 15 훈령 제297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부터 ㉞ 까지 생략

㉟ 광명시 이미지 형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 부분과 제1호 중 “담당관・과”를 “실・과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와 제2호 중 “주무담당”을 “주무 팀장”으로, 같은 조 제3호 중 “주무”를 “사무장”으로 한다.

㊳ 및 ㊲ 생략

부칙 〈2014. 9. 4 훈령 제339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9. 12. 20 훈령 제411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광명시 이미지 형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⑨ 부터 ⑪ 까지 생략

〔별표 1〕 〈개정 2014. 9. 4〉

광명시이미지형성계획 관리대상

구 분	내 용	
기 본 요 소	① 심볼마크 ② 로고타입 ③ 전용색채 ④ 전용서체 ⑤ 캐릭터(마스코트)	⑥ 전용문양 ⑦ 시그니춰시스템
응 용 요 소	① 안내 체계 ② 인쇄 홍보물류 ③ 가로 시설물 (보도, 방음벽) ④ 차 량 류 ⑤ 광명시가지 색채 ⑥ 옥외 광고물	

〔별표 2〕 삭제 〈2014. 9. 4〉